자료기증서

본인은 다음의 자료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기증하며, 기증한 자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귀 도서관의 규정에 따르는 것에 동의합니다.

「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기증자료 등록 및 관리지침」

제5조(자료의 등록) ① 수집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서관 장서로 등록한다.

1. 단행본: 1종 1책
2. 학내간행물: 1종 3책

② 도서관에서 이미 소장하고 있거나 제1항 각 호를 초과하는 자료는 학술적 가치나 이용 잠재성에 따라 추가 등록할 수 있다.

제7조(등록 제외 자료의 처리)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및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제외 자료는 타 기관이나 단체에 재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.

- 기증일자 : 20 년 월 일
- 연 락 처 :
- 기증자료 : 외 책

기증인 (인)

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귀하